https://doi.org/10.5392/JKCA.2019.19.03.429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Welfare Act between the Korea and Japanese

이도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Doh-Hee Lee(2dohee@hanmail.net)

요약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고령사회 | 노인복지법 |

Abstract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g early are investing a lot of money or legal system to provide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old age such as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long-term protection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Both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intervening in the social security of the n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elderly welfare Act is a time when more careful diagnosis is needed because it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pursuing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it in such an ideology and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Act of Japan, which is the selection country of aging,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 keyword : | Aged Society | Elderly Welfare Act |

접수일자 : 2019년 01월 03일
수정일자 : 2019년 01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1월 19일
교신저자 : 이도희, e-mail : 2dohee@hanmail.net

I. 서 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7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임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인구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닥쳐있는 상황이다[1]. 이러한 고령사회[1]로의 진입은 단순히 인구구조의 문제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2-4].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첫째,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조건의 개선 등에 기인한 사망률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아동사망률의 저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족단위의 변화 등에 따른 저출산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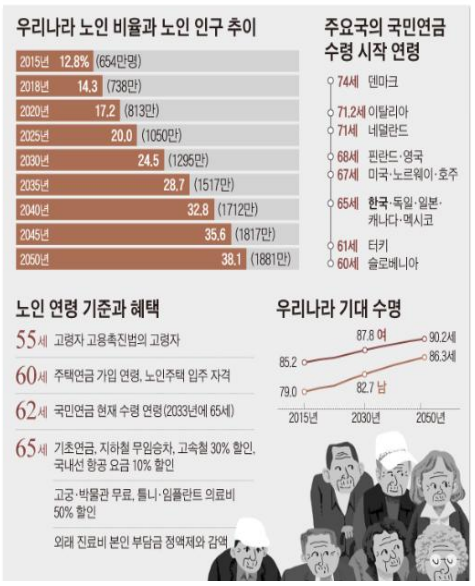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노인비율과 노인인구 현황[6]

한편, 우리나라는 1981년 6월5일 처음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7], 이후 5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분주하게 고령사회를 준비하여 왔다. 또한, 고령사회 선발국가의 대응과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고령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왔다[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와 과제는 산재해있고[4][8], 이에 따른 장치를 마련해야함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고령사회의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일본의 노인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출발하였다.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11일(법률 제133호)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고령자복지에 관헌법으로 1874년 '휼구규칙(恤救規則)'이 반세기정도 존재하였었다. 이후 동법이 '구호법(1929년)'으로 개정되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노인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었다[10][15].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재정비를 위하여 (구)생활보호법(1946년 법률 제17호)이 제정되었다. 이후 일본헌법 제25조의 인권 및 생존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1950년 5월4일 법률 제144호)가 제정되었다[10][11]. 이러한 제도적 여건의 마련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93년 12월 '고령자보건복지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1994년 3월 28일 Gold Plan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신Gold Plan'의 제안하면서, '21세기 복지비전'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0년 4월 '개호보험법'시행, 2004년에는 연금개혁의 시행 등 초고령사회를 맞이함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12-15].

한편, 2018년 1월 일본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대책 대책'을 개정해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기고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연금 수령을 70세 이상에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 및 관련 제도를 고찰과 더불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법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사회 선발국가인 일본 노인복지법제의 정책적 차원의 벤치마킹 방안을 모

1)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1%로 정의하고 있다[7].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8년 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26%(65세 이상 738만명, 전체인구 5,178만명)로 산정됨[6].

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부합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일본과 한국의 노인관련 법제 현황

1.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현황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성

일본의 노인복지법의 제정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출발하였다[10][15]. 즉, 핵가족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노인부양문제로부터 각종 노인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8][12].

이러한 노인문제 인식은 1950년대 중반까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그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상황과 여건이 그 만큼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일본은 1955년 이후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두드러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생활보호사업만으로는 부족하였다[11][15]. 이에, 가족제도차원의 사회보장적 사회복지기능보완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제도를 대신하게 하려는 데에서 노인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활용은 노인문제의 인식과 해결이라는 노인복지입법화의 초기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정책화로 추진한 점에서 더욱 발빠른 대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12][15][17]. 이로써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에 제정하면서, 고령자의 복지를 독립된 법체계로 입법화를 출발로 시작하였다.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일본 노인복지법 구성체계

제1 장 총칙(제1조- 제10조의 2)
제 2 장 복지의 조치(제10조의 3- 제13조의 2)
제 3 장 사업 및 시설(제14조-제21조의 7의 2)
제 3 장의 2 노인 복지 계획(제21조의 8-제21조의 11)
제 4 장 비용(제22조-제27조)
제 4 장의 2 유료양로원(제28조-제31조의 5)
제 5장 보칙(제32조-제37조)
제 6 장 벌칙(제38조- 제43조)
부칙

2) 노인복지법의 연혁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11일(법률 제133호)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고령자복지에 관헌법으로 1874년 '휼구규칙(恤救規則)'이 반세기정도 존재하였다. 이후 동법이 '구호법(1929년)'으로 개정되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노인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재정비를 위하여 (구)생활보호법(1946년 법률 제17호)이 제정되었다. 이후 일본헌법 제25조의 인권 및 생존권의 이념을 구형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1950년 5월4일 법률 제144호)이 제정되었다[10]. 그러나, 이러한 법은 모두 일반 구빈법으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생활보호법'과 전쟁이후 '아동복지법'(1947년 12월 12일 법률 164호), '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12월 16일 법률 제283호)이 제정되었다[10][12].

한편, 1958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1959년에는 국민연금법을 제정하면서, 전국민보험 및 전국민연금체제가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신박약자복지법'(현, 지적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복지6법'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무엇보다 1967년에는 「복지우선」의 시책을 내건 '혁신도정'이 시작되었고, 이시기의 법률로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1970년 5월21일)을 제정하였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고도성장이 주춤해지면서, 금융재건, 사회보장, 복지의 재평가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비지급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인보건법'(1982년 8월17일)이 제정되고, 1984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피보

험자 본인의 자기부담과 퇴직자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1982년의 '노인보건법'은 이전의 노인의료비지급제도를 폐지하면서 고령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즉, '노인보건법'은 ①예방에서 사회복귀까지의 포괄적인 의료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것 ② 고령자의 의료비용을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보험제도가 보험자로서 지출하는 것 ③ 고령자는 진찰을 받을 때에 일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성과 적절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10][14].

표 2. 일본의 노인복지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내역[2)]

시기	내용
1958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59년	국민연금법 제정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1966년	경로의 날 제정
1972년	노인복지법개정에 의한, 노인의료비지급제도(1973년-1982년)
1978년	Short Stay Service 사업 개시
1979년	Day Service 사업개시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 노인의료비지급제도 폐지
1986년	장수사회대책 계획수립
1989년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골드플랜)' 각 시도부현에 고령자종합상담센터 설치
1990년	노인복지법 개정 재택복지서비스 추진, 노인보거복지계획 수립, 복지서비스의 실시권한의 시정촌에 위임, 노인건강보호사업 촉진, 유료노인층의 지도감독 강화 등
1994년	노인복지법개정 재택개호지원센터 제도적 장치마련, 처우개선 및 질 향상, 각 시정촌의 정보제공 의무화, 신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신 골드플랜) 수립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997년	**개호보험법 제정**
1999년	**골드플랜 21 수립**
2001년	**고령자주거법 제정**
2004년	골드플랜 21 종료, 연금개혁 시행
2007년	치매지역 지원체제 구축 등 지원 사업 추진
2008년	이후, 치매 관리 고도화 추진 사업 추진
2011년	고령자주거법 개정, 고령자용 주택도입 촉진
2014년	개호보험법 개정-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2014년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개호보호법 개정
2015년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보를 개정하는 법률' 제정
2017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정

2) 김남순 등(2017)와 김정순(2004)의 연구내용을 재구성함.

1989년 12월 31일에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을 공표하면서, 복지의 보편화, 일반화 및 지방행정의 적극추진, 행정집약형복지로부터 다원적 복지공급시스템 구축 등의 통합적인 복지계획추진을 시도하였다. 이후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에 열거된 여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13]. 즉, 1993년 12월 '고령자보건복지대책'의 통합적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1994년 3월 28일 Gold Plan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신Gold Plan'의 제안하면서, '21세기 복지비전'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0년 4월 '개호보험법'을 시행하고, '(구)사회복지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더불어 서비스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문제해결 등을 위한 자기평가시스템의 도입 등 이용자중심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연금개혁을 시행하였다[13][14][18].

이와같이, 1990년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고령후기 노인들에 대한 간병간호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나, 국가재정의 투입만으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그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뜻에서 1997년 '간병보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노인의 간병간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22.5% 내외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도록 제도화하였다[10][18].

한편, 이에 앞서 일본은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되는 21세기를 앞두고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90년 '고령자보건복지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990년부터 10년간의 기간 중 홈헬퍼 10만 명을 양성 배치, 5만 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설치, 재가노인들에 대한 간병 또는 간호 등을 담당할 센터 1만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병보험의 제정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창구역할을 하기도 하였다[11][19].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정 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 원리를 밝히고, 노인에게 건강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인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기본이념(제2조·제3조) 및 노인복지증진의 책무(제4조) 규정에 의해 구체화 하고 있다. 특히, 본 법률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서비스와 일부 노인에 대한 특별한 문제해결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9][15].

3) 노인복지법의 보건사업 제도

일본의 '노인보건법'[10]은 보건사업을 '의료 등'과 '의료이외'의 보건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3조).

우선 '의료 등'의 보건사업에는 ①의료(의료비의 지급을 포함) ②입원식사의료비의 지급 ③특정요양비의 지급 ④노인보건시설요양비의 지급 ⑤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⑥이송비의 지급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의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①외래의 경우에는 각 보험의료 기관별로 월 4회까지 2천 엔을 한도로, 1회에 5백엔, ② 입원의 경우에는 1일 1천엔을 부담한다. '의료이외'의 보건사업에는 ①건강수첩 교부 ②건강교육 ③건강상담 ④건강검사 ⑤기능훈련 ⑥방문지도 ⑦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편, 노인보건시설은 고령자 등에 대하여 그 심신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귀를 촉진하는 시설이다. 이는 1986년 법 개정으로 본격화되었고, 장기보호뿐만 아니라, 단기와 주간보호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10][19]. 노인방문간호요양비는 노인의료수급대상자가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노인방문간호사업자로부터 노인방문간호를 받은 경우, 지자체장에 의해 지급된다[11].

또한, 1990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노인보건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계획은 각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에 의료등 이외의 보건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기능훈련, 반문지도에 관하여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량, 기타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지자체 장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과 당해 지자체 내에서의 노인의 실태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고령후기 노인들에 대한 간병간호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나 국가제정의 투입만으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그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뜻에서 1997년 간병보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노인의 간병간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22.5% 내외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10][12].

이와같이, 노인보건법 또는 간병보험법 등의 제정으로 인하여 일본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즉, 재가노인지원센터, 방문간호스테이션, 주간보호센터, 고령자종합상담센터, 복지기기 대여서비스 프로그램,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서비스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11].

일본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의 일이다[15].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지탱해 나갈 수 없는 허약한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홈헬퍼를 파견하여 신체적인 수발과 가사일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한다[12][15]. 그리고 방문간호스테이션은 노인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로서 199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센터는 재가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보조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파견하여 노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시설 중에는 '1일 서비스센터(Day Service Center)'라는 것이 있다[11]. 현재 전국적으로 1만7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은 재가에서 생활하는 허약노인 또는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을 매일 아침 시설에 데리고 와 입욕 또는 물리치료와 동작훈련도 하게하고, 점심식사도 제공하는 등으로 보살피다가 저녁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기능을 수행한다. 재가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단기주간보호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와상노인 또는 치매노인을 보살피고 있는 가족이 휴양이나 관혼상제,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얼마동안 집

을 비워야 할 입장에 놓여있을 경우, 그가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를 일시적으로 시설에 위탁·보호케 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기간은 1주간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입소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11][1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이러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은 간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노인보건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지만, 일정소득 이상의 중산층 노인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대부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간병보험법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간병보험법에 의해서 충당된다[12][20].

2. 한국의 노인복지법제 현황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5일 제정 및 시행되었다(법률 제3453호). 동 법의 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7].

>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열악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함.
>
> ②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 ③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복지실시기관)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함.
>
> ④ 복지시설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 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함.
>
> ⑥ 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함.
>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정 이유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고령사회의 단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을 넘어서 국가가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출발로 노인복지법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노인복지법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 노인복지법 구성 체계

제 1 장 총칙(제1조-제8조)
제 2 장 삭제(제9조-제22조)
제 3 장 보건 · 복지조치(제23조-제30조)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제31조-제44조)
제 5 장 비용(제45조-제49조)
제 6 장 보칙(제50조-제55조)
제 7 장 벌칙(제56조-제62조)
부칙

2) 노인복지법의 연혁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되었다.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다음 [표 4]와 같이 그 목적,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이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은 국가의 책임임을 제시하고 있다.[3][7]

3)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 1981.6.5.] [법률 제3453호, **1981.6.5., 제정**])

제1조(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

표 4.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제2조(기본이념)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노인복지법 제정의 목적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두었다. 또한, 본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표 5. 한국의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시기	내용
2018년 3월 13일	일부개정
2018년 1월 25일	일부개정
2017년 9월 15일	일부개정
2017년 6월 3일	일부개정
201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2016년 6월 30일	일부개정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1998년 7월 1일	전부개정
1998년 5월 23일	전부개정
1997년 10월2일	노인의 날 지정
....	
1989년 12월 30일	전부개정
1981년 6월5일 제정	'노인복지법(법률 제3453호)' 제정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법률제2191호)' 제정

[표 5]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총 50회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제정 및 개정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법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그 기본 목적과 이념의 제정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었다[7][9][15].

Ⅲ.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

1. 한일노인복지법의 내용상 차이

1) 목적 및 이념의 차이

한일의 노인복지법은 우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이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노인복지에 관한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노인에 대하여 심신건강의 보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노인복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여, 보건에 관한 내용을 1982년 제정한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고 있다[11][21-23]. 또한, 한국에서는 경로 효친사상의 영향으로 노인은 후손의 양육에 기여해온 자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선가정 후복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사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23].

2) 노인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상의 차이

한국에서는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임의규정으

량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복지 증진의 책임이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11]. 이는 보인복지에 대한 책임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일면을 볼 수 있다.

3)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차이

한국은 '노인을 입소시켜서'라고 규정하여 적용대상이 모호한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11][22]. 또한 한국은 시설의 설치, 폐지, 휴지, 수탁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22]. 반면에 일본은 위반하였을 때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 한일노인복지법의 규정상 차이

1) 한국 노인복지법에만 있는 규정 사항

한국의 노인복지법에만 규정되어져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7].

첫째, 생업지원 제도이다(법, 제25조(생업지원)).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경로우대와 관련한 사항이다(법, 제26조(경로우대)). 즉, 경로우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관주도의 제도이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와 관련한 조항이다(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은 2004년 신설되었으며,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은 2018년에 신설되었다. 특히 이들 규정에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학대받은 노인의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더불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었다.

넷째, 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다.

2) 일본 노인복지법에만 있는 규정 사항

한편, 일본은 75세 이상 노인의 증가가 예상되는 곳에서 치매 의 급증은 피할 수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치매 노인 지원 대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의 조사에서 '보호관리지원을 요하는 치매노인'은 2025년에는 32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11][15]. 또한, 2005년 6월 부터는 법령 상의 용어를 '치매'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매 관련 시책은 '상담체제의 정비' 및 '주택대책'외에 '시설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조사연구' 및 '치매이해를 도모하는 지역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기존의 치매 관련 사업을 재편했으며, 2007년도부터는 '치매지역 지원체제 구축 등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도부터 '치매관리 고도화 추진사업'을 시작하였다[4][12].

이러한 치매관리 고도화사업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12][19].

첫째, '인지증(치매)대응형' 관련 조항으로, 1997년 일본 노인복지법 개정시 추가되었고, 2005년에 개정된 것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노인 문제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조항이다.

둘째, 노인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한 조항으로, 1990년 노인복지법 등 일부 개정은 노인보건법을 개정시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시설에 관한 노인복지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993년 4월 시행). 이는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계획과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에 대하여 확보해야할 사업의

표 6. 한국과 일본 노인복지법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내용상 차이	목적과 이념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수동적인 입장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 입장
		경로효친사상의 영향으로 노인은 후손의 양육에 기여 해온 자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선가정후복지 개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노후 생활보장을 이념으로
	규정방식 및 내용	임의규정	강제규정
		'노인을 입소시켜서'라고 규정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자'로 규정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규정 위반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 없음
규정상 차이		첫째, 생업지원 제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둘째,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 셋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그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둠.	첫째, 체계적인 치매 관련 시책을 둠. 예) 상담체제 정비, 주택 및 시설대책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치매이해를 도모하는 지역만들기 캠페인 둘째, 2007년 치매지역 지원체제 구축 지원사업, 2008년 치매관리고도화 추진사업 시행

양과 목표 등을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표준을 참고하여, 복지 조치의 실시에 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계획을 각각 설정한다.

셋째, 노인관련 시설에 대한 지정법인 설립에 대한 조항이다. 즉,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된 민법상의 법인이다. 각 지자체에 1개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정부에서 노인보건의 일을 민간에게 위탁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실시기관에 대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하여 복지의 조치를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노인복지법에 복지사무소, 사회복지관, 보건소, 민간위원, 개호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Ⅳ. 한·일 노인복지법에 대한 제언

1. 고령사회에 맞는 법률개정 모색

이미 주요 선진국은 인구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왔고, 이는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 보건의료서비스, 장기요양보호제도 등의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왔다[24]. 무엇보다다 선진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보다는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리가 긴장해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26].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에 대한 복지이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 외국들은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장기보호 문제 등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을 투입하거나 법제도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24][25].

현재 일본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노인복지 입법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어져 있다. 즉, 초고령사회에 고령자의 의료,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급부비용 부담은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문제 해결이 과제가 아닐수 없다[11][15]. 또한, 일본에서의 노인복지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운영관리라는 점이다. 즉, 고령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제고한다는 점이다[25]. 이는 향후 우리에 감당해야 할 고령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고령자주거환경이나 이동권의 확보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고령자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요개호자 내지는 요지원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기반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이 또다른 특징이다.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지만, 개호서비스의 양적확충과 질적인 문제, 개호 및 보호지원의 판정문제, 케어매니저의 자질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가족보호자에 대한 현금급여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25][26].

이외에도 일본은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즉 현행 개호보험제도는 피보험자수급자의 범위가 연령층과 개호원인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0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와 개호보험시설에 있어 개호보수체계의 문제, 그리고 개호와 의료와의 관계의 정비 등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다[26].

이러한 선발 일본의 제도는 2009년도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2. 노인복지정책 차원의 개선방안

이와 같은 선진 고령사회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차원의 법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노인권익 옹호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근거 및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즉,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노인은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노인복지정책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11][27-29].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검토 및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은 노인이 부득이 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화되고 욕구에 상응하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가복지서비스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인력 활용방안으로 비교적 강제성을 가지는 고령인력 의무고용제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65년부터 모든 민간기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체 종업원 대비 6%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9][30].

마지막으로, 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실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사적, 공적 부양제도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법제화하여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11][26]. 이를 위하여,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차원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고령사회기준인 14%를 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령사회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고령사회의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일본의 노인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발하였다.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11일(법률 제133호)에 제정과 더불어 다차원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준비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 및 노후생활을 고찰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되었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 진단을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1년 6월5일 처음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5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분주하게 고령사회를 준비하여 왔다. 또한, 고령화의 선발국가들의 대응과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와 과제는 산재해있고, 이에 따른 장치를 마련해야함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즉, 고령사회 대응에서 우리나라는 초보단계에 있기에 선발국가의 제도 및 실천적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 선진국은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노인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는 시간적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고령 및 초고령사회의 성공적인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초당적 준비를 해야 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법은 그 이념과 현실 속에서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여 가는 과정에서만이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사회 대응에서 초기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고령사회 도입국가들의 입법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각국의 전통과 문화, 풍습이 다르고, 오랜 역사의 제도적인 차이로 주요국가의 노인복지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연구에 한계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이후에 다시 준비해야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에 근거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진 초고령사회는 오래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노인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고민과 문제해결에 당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연구보고서, 2017.

[2] 김미숙 등,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3-14, 2003.

[3] 김호식, 정미녀, 손경숙,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1, pp.73-93, 2005.

[4] 이윤호, “고령화와 경제적 쟁점: 논쟁문제 수업,” 시민교육연구, Vol.45, No.4, pp.203-228, 2015.

[5] 매일경제신문사, “정년연장 안착, 양육부담 경감을 : 고령화·저출산,” *매경이코노미*, 제1907호, 2017.5.10.

[6] 통계청, *우리나라 노인비율과 노인인구 현황*, 연구보고서, 2018.

[7] www.law.go.kr

[8] 이재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지방행정연구, Vol.31, No.1, pp.35-62, 2017.

[9] 김남순 등,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7-01, 2017.

[10] 김정순,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 고령사회 법제6, 현안분석2004-18*,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김동환, “일본의 고령화 대책,” *금융VIP시리즈*, Vol.2013, No.10, pp.1-55, 2013.

[12] 박용근, “독일과 일본의 노인복지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Vol.35, pp.163-195, 2012.

[13] 日本厚生勞働省, 「厚生勞働白書」, 2004.

[14] 加藤智章·前田雅子, 「社會保障法(第2版)」, 有斐閣 アルマ, 2003.

[15] 이금자, “21세기 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 한일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복지상담학연구, Vol.2, No.1, pp.83-108, 2007.

[16] 조선닷컴,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높이려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2018. 3.7기사,

[17] 현외성, “차기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실천방향,” 사회복지정책, Vol.15, pp.183-201, 2002.

[18] 日本 總務省, 「總務省 統計局 勞働力調査」, 2002.

[19] 전대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 전략의 시사점,” 지방행정연구, Vol.31, No.1, pp.63-84, 2017.

[20]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보건법으로 노인문제 해결 일본*, 2013.

[21] 나용선, “독일・일본・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연구, Vol.8, No.1, pp.255-281, 2011.

[22] 이정,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2003.

[23] 이홍재, "고령화사회에서의 법과 정책 : 논단 ; 高齡者の社會保障法的地位-國民年金法と老人福祉法を中心に," 한일법학연구, Vol.20, pp.203-214, 2001.

[24] 박용근, "독일과 일본의 노인복지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Vol.12, pp.163-195, 2012.

[25] 최봉석, "독일의 노인복지법제 연구," 토지공법연구, Vol.29, pp.413-436, 2005.

[26] 이상은, 정찬미, 조영식, "한국에서의 노인보충급여 도입방안: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도입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추계학술대회, pp.41-58, 2017.

[27] 이현민, 조문기, "노인학대의 현황 및 개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Vol.64, pp.247-269, 2017.

[28] 강동욱,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Vol.25, No.2, pp.67-97, 2018.

[29] 강동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Vol.15, No.2, pp.473-495, 2015.

[30] 신복기, 박은앙,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pp.149-178, 2015.

저 자 소 개

이 도 희(Doh-Hee Lee) 정회원

▪ 2019년 2월 현재 : 충남대학교경영학부 초빙교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경영학 관리회계, 법학, 사회복지학